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50913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69347 양수금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23. 접수 제35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을 6,100,000원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대출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69347) 2018. 11. 13.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8,794,198원 및 그 중 3,838,320원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0. 16.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에서 위 채권양도사실 기재 채권양도통지서(갑 제7호증)가 첨부된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23. 접수 제35486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은 2018. 9. 1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B 및 G, H이 있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문부여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해해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2013.경 이루어진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C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23. 제35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지현

별 지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답 707㎡

2. 충청남도 서산시 대 1470㎡

3. 충청남도 서산시 1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8.94㎡

